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규정 3-1-13

규정번호 3-1-13
제정일자 2008.3.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3차 개정
관리부서 학사학위운영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(개정 2021.06.21.)
2.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점검 및 교육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(개정 2021.06.21.)
3. 전공심화과정 수요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(호신설 2021.06.21.)
4.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 및 성과분석(환류실적 관리)에 관한 사항(호신설 2021.06.21.)
5.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(개정 2021.06.21.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에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 주임교수로 한다.(개정 2021.06.21.)

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과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/2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3.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

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14> <생략>

<15>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③, 제8조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16> - <102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제2항)